

대법원 2019. 3. 14 선고 2018다20048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9. 3. 14 선고 2018다200488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6 선고 2017나50012 판결

전 문

원고, 상고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주원(담당변호사 이동건)

피고, 피상고인서울특별시 중랑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(담당변호사 최원락)

판결 선고2019. 3. 14.

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6. 선고 2017나50012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을 포기하였고, 원고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를 상속받았으므로,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.

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·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.

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김선수

대법관권순일

주심대법관이기택

대법관박정화